

기독교대한감리회 신내교회 정관

제 1조〔명칭〕 본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내교회라 한다.

제 2조〔위치〕 본 교회는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32길 21-6에 위치한다.

제 3조〔목적 및 소속〕 본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를 신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4조〔사업〕 본 교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.

1. 전도, 교육, 구호를 위한 사업
2. 사회교화 및 봉사에 대한 사업
3. 어린이 유아원 유치원 사업
4.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

제 5조〔회원〕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정에 의한 무흠한 입교인으로 구성하고 임원들과 평신도로 구분한다.

제 6조〔임원〕 본 교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.

1. 회장: 본 회의 회장은 담임목사이며, 교회의 대표자가 된다.
2. 회원: 선교부장, 교육부장, 재무부장, 관리부장, 사회봉사부장, 문화부장, 예배부장 각1인, 감사 1인

제 7조〔임원 선출〕 임원은 당회에서 선출한다.

제 8조〔임원의 직무〕 본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.

1. 회장은 담임목사로서 본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.
 - (1)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.
 - (2) 설교, 속회, 심방, 선교사업을 힘쓴다.
 - (3) 장정에 의해 교회를 치리하고 교인을 지도한다.
 - (4) 교회의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. 당회, 임원회, 기획위원회
2. 선교부장은 교세확장과 신도 증가를 위한 선교활동을 관장한다.
3. 교육부장은 교인들의 신앙교육과 봉사를 위한 유아교육을 관장한다.
4. 재무부장은 금전출납 및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.
5. 관리부장은 교회의 기본재산과 비품을 관리한다.
6. 사회봉사부장은 사회에 대한 봉사와 구호활동을 관장한다.
7. 문화부장은 교회음악을 비롯한 각종 예술과 체육활동 업무를 관장한다.
8. 감사는 수입, 지출 및 재산관리 사항을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한다.

제 9조〔임기〕 임원의 임기는 교회 임직시까지 한다.

제 10조〔회의〕

1. 정기당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, 임시당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2. 정기 임원회는 분기 1회, 임시 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- 제 11조〔성원과 결의〕 정기당회 임시당회는 회집된 입교인으로 하고,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12조〔재산〕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과 그 헌금으로 취득하는 동산 및 부동산으로 한다.
- 제 13조〔재산관리〕 본 교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,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된 구역회의 결의로 취득, 처분, 담보제공, 및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.
- 제 14조〔회계년도〕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-다음 해 11월 30일로 한다.
- 제 15조〔부칙〕 본 규약은 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. 또한 본 규약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
2016년 9월 18일(일)

